

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 안 자 : 김경호의원 외 6인

2. 개정 이유

민원인의 폭언·폭행·성희롱·악의적 제보 및 고소·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성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안 제5조)
- 다. 지원사항,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라. 지원 방법,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, 지원 결정(안 제8조 ~ 안 제10조)
- 마. 시행규칙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예 고 : 의견없음(2022. 11. 8. ~ 11. 14.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인으로부터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, 지원사항, 지원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으로부터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예방과 치유 대책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